

성균관대학교 영재교육원 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명칭과 위치) 본 교육원 성균관대학교 영재교육원(이하 “교육원”라 한다)이라 하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-2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에 위치한다.

제2조(목적) 본 교육원은 영재교육진흥법 및 동시행령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일반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의 학생들 중 인문사회과학 분야에 재능이 뛰어난 인재를 조기에 발굴한다. 더불어 영재교육 연구 및 인재 양성, 학교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업) 본 교육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영재교육연구 분야의 학술 연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
2. 학술강연회, 연구발표회 개최
3. 외부로부터 위탁받은 연구과제의 수행
4. 연구원의 해외연수 및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와 학술교류
5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제 2 장 조 직

제4조(기구) 본 교육원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.

1. 교육원장
2. 교육부원장
3. 운영위원회
4. 선정심사위원회
5. 그 외 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각종 부서

제5조(교육원장) ① 교육원장은 교육원에 참여하는 본교의 교수(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) 가운데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교육원장은 교육원을 대표하며, 교육원의 제반업무를 통할한다.

③ 교육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④ 교육원장이 출장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직무대행은 연구원 중 교육원장이 선임한다.

제6조(교육부원장) ① 교육부원장은 박사 급 이상으로 하여 교육원장이 임명한다.

② 교육부원장은 교육원장과 함께 교육원을 대표하며, 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한다.

③ 교육부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④ 교육부원장이 출장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직무대행은 연구원 중 교육원장이 선임한다.

제 3 장 연구원

제7조(연구원) ① 본 교육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원(員)을 둔다.

1. 연구위원: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위촉한 자로 한다. 다만,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타교 전

임교원을 포함할 수 있다.

2. 상임연구원: 연구목적 수행을 위하여 상근하는 자로서 연구경력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.

가. 수석연구원: 박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부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 경력을 갖춘 자

나. 책임연구원: 박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조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

다. 선임연구원: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전임강사급 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

라. 연구원: 석사학위이상 소지자

3. 객원연구원: 연구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인사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된 자로 한다.

4. 연구원보: 연구수행을 보조하는 자로서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한다.

② 교육원은 필요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으며, 조교는 본교 조교임용규정에 따라 임용한다.

③ 제1항 제2호와 제4호 상임연구원과 연구원보는 교육원장이 추천하고 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
④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원은 센터장이 위촉한다.

⑤ 상임연구원, 객원연구원 및 연구원보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 4 장 운영위원회

제8조(설치 및 구성) ① 교육원은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0인 내외를 구성원으로 하며, 위원장은 교육원장이 맡는다.

③ 운영위원은 교육원장이 위촉한다.

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9조(심의사항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육원의 정책방향과 연구계획에 관한 사항

2. 교육원의 규정에 관한 사항

3. 교육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
4. 교육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

5. 교육원 산하 연구조직의 설치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

6. 기타 교육원 운영의 중요한 사항

제10조(회의) ① 운영위원회는 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

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교육원장이 결정한다.

제 5 장 선정심사위원회

제11조(설치 및 구성) ① 교육원의 교육 대상자 선정 및 이수에 관한 사항 심의, 교육원 운영에 대한 자문을 하기 위해 선정심사위원회를 둔다.

② 선정심사위원회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

1.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
2. 영재교육전문가
3.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
4.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의 교육공무원
5. 그 밖에 영재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제 6 장 재 정

제12조(재정) 본 교육원의 재정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및 교육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여 충당하며 이외 연구비, 지원금, 기부금 및 기타 보조금등으로 충당한다.

제13조(회계연도) 교육원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.

제 7 장 사업보고 및 감사

제14조(사업계획 및 보고) 교육원장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또한 교육원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,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5조(감사) 교육원 그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.

제 8 장 해 산

제16조(해산) 교육원의 해산은 본교 「부설연구기관 설치 및 운영 규정」제5조제2항을 따른다.

제 9 장 보 칙

제17조(세부사항)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이를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